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00
----------	--------

제출년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3. 12. 12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기준에 맞게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에 포함<안 별표1>
- 다. 직종개편 후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안 별표2>
- 라.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3>

구 분	총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 정 직			기능직	연구직
			소 계	5급 이상	6급 이하	전 문 경 령 관	소 계	5급 상 당	6급상당 이하		
현 행	1,274	1	1,031	65	966	<신설>	15	2	13	227	-
개 정	1,274	1	1,267	65	1,201	1	5	2	3	<삭제>	1
증 감	-	-	+236	-	+235	+1	△10	-	△10	△227	+1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 부칙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정원의 관리) 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3. 11. 7. ~ 2013. 11. 11.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중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전행정국(총무과)의 사무명 제1호가목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삭제 <2012. 2.23>

[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2)%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5)% 이내	(95)%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 율	(40)% 이내	(20)% 이내	(4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4	1,27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267	1,267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2		9	16
6급 이하 계	1,201	1,201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 계	3	3			
연구직 계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 ----- -----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p> <p>제5조(직렬별 정원)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p>																														
<p>[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일반직</td> <td style="width: 20%;">기능직</td> <td style="width: 20%;">별정직·정무직</td> </tr> <tr> <td>비율</td> <td>(79)% 이상</td> <td>(19)% 이내</td> <td>(2)% 이내</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 3. (생략)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79)% 이상	(19)% 이내	(2)% 이내	<p>[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20%;">일반직</td> <td style="width: 20%;">별정직·정무직</td> </tr> <tr> <td>비율</td> <td>(99)% 이상</td> <td>(1)% 이내</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 3. (현행과 같음)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79)% 이상	(19)% 이내	(2)% 이내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p>[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0%;">4급 이상</td> <td style="width: 10%;">5급</td> <td style="width: 10%;">6급</td> <td style="width: 10%;">7급</td> <td style="width: 10%;">8급</td> <td style="width: 10%;">9급</td> </tr>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7)% 이내</td> <td>(22)% 이내</td> <td>(32)% 이내</td> <td>(30)% 이내</td> <td>(8)% 이상</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 이내	(30)% 이내	(8)% 이상	<p>[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0%;">4급 이상</td> <td style="width: 10%;">5급</td> <td style="width: 10%;">6급</td> <td style="width: 10%;">7급</td> <td style="width: 10%;">8급</td> <td style="width: 10%;">9급</td> <td style="width: 10%;">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5)% 이내</td> <td>(22)% 이내</td> <td>(32)% 이내</td> <td>(32)% 이내</td> <td>(7)% 이상</td> <td>(1)% 이내</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5)% 이내	(22)%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 이내	(30)% 이내	(8)%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5)% 이내	(22)% 이내	(32)% 이내	(32)% 이내	(7)% 이상	(1)% 이내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 이내	(29)% 이내	(28)% 이내	(29)%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 율	(14)%이내	(27)%이내	(40)%이내	(19)%이상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4	1,27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031	1,031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2		9	16		
6급 이하 계	966	966					
별정직 계	15	1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계	13	13					
기능직 계	227	227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5)% 이내	(95)%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 율	(40)% 이내	(20)% 이내	(40)% 이상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74	1,27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267	1,267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2		9	16		
6급 이하 계	1,201	1,201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계	3	3					
연구직 계	1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일반직 및 기능직과 별정직의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체계가 각 직급별 상당계급에서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은 없음
- 다만,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의 경우 새로 신설될 급여체계에서 전환전 별정직 직위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직전 상위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나 그 금액은 100천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천구
연락처	02-3153-8214